

「BNK행복한아파트통장」 발전기금 출연 협약서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BNK행복한아파트통장 (관리사무소)의 예금주로서 이하 "아파트"라하며, "아파트"가 가입한 BNK행복한아파트통장을 "아파트 통장"이라 함)와 주식회사 부산은행 ○○○지점(이하 "은행"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아파트발전기금 출연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출연대상 전제조건) "아파트"는 "은행"과 아파트관리비 수납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의 명의로 BNK행복한 아파트통장을 개설하여 관리비 집금계좌로 이용한다. 단, "아파트"가 아파트관리비 수납계약 또는 BNK행복한아파트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발전기금을 출연하지 아니한다.

제2조 (출연금액 및 출연기간) 출연금액은 "아파트 통장" 연 평균잔액의 0.2%를 출연하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아파트"가 가입한 BNK행복한아파트통장의 대상기간 연 평균잔액의 0.2%를 발전기금으로 출연한다.
단, "아파트"가 가입한 BNK행복한아파트통장은 "은행"의 자동이체 수납방식에 의해 전산으로 연계된 통장의 실적만을 인정한다.
- ② "대상기간 연평균잔액"의 계산은 "아파트"가 가입한 BNK행복한아파트통장에 대해 가입월부터 그해 12월까지, 그 이후에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아파트"가 가입한 BNK행복한아파트통장 연 평균잔액의 0.2%를 매 이듬해 상반기 중 제3조의 출연 계좌번호로 입금한다.
- ③ 아파트 발전기금 출연기간은 "출연협약 체결일로부터 당해년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협약 만료 시점 1개월 전까지 아파트 또는 은행의 별도의 서면 통지가 없는 한 협약은 협약 만료일로부터 1년씩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제3조 (출연 계좌번호) 발전기금 출연은 "아파트 통장"인 000-0000-0000-00으로 한다.

제4조 (협약변경 및 해지) "아파트"와 "은행"은 협약기간 중 이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1개월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한다.

20 . . .

"아파트" ○○○○ 아파트 "은행" 주식회사 부산은행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지점 지점장 (인)